

[붙임3]

22년 보조금 지급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
1 개별점수 산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60점	
①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	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	25점	사고사망만인을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
③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	10점	단, 재해율 순위 10개 전 소업종 단위로 1점씩 차감
④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5점	
⑤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15~29세이하)	10점	
⑥ 크레인(정격하중 2톤이상), 자게차(좌 입식) - 해당설비 사진제출(크레인 정격하중 확인가능 사진) 사 인정	5점	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40점	
⑦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우수기업, ②강소기업, ③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, ④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⑤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⑥일자리 으뜸기업⑦일터혁신 우수 기업(인증)⑧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⑨산학협력 우수기업⑩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10점	각 5점씩 -> 2점씩 단,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10점으로 한정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10점	'21~'22년 참여업체
⑨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	20점	
■ 가점항목 (사망사고 감소사업, 고용·산업위기지역)	+30점	
⑩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	+10점	신규
⑪ 고용위기 지역 • '21년~'22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	+10점	
⑫ 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	+10점	신규
계		